

의안번호	2207202
의 퇴 인	김성원 의원
회 답 일	2024. 1. 7.
추계번호	24F61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이등급 8급 등급 신설에 따른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대상 확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29조제4항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감면)	○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을 상이등급 8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확대 － 감면율: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의 경우 50% 감면)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9조제4항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감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을 상이등급 8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취득세수 및 자동차세수의 감소가 예상됨(안 제29조제4항)

- 현행법은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8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확대
 - － 다만, 이는 기존의 1~7급까지 구성된 상이등급 체계에 8급 등급을 신설하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189)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8급 등급 판정을 받게 될 국가유공자의 규모와 이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여 등록하게 될 자동차의 가액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 관련 정보가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상이등급 8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
이므로 8급 등급이 신설될 경우 8급 등급에 해당하게 될 국가유공자의 인원을 정확하게 추론하기 어려움
 - 참고로, 최근 5년(2019~2023년)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 최근 5년간 상이등급 판정 현황: 2019~2023년

(단위: 명)

등급	2019	2020	2021	2022	2023
1급	1,524	1,468	1,402	1,328	1,263
2급	1,336	1,268	1,192	1,107	1,040
3급	6,532	6,382	6,203	5,901	5,640
4급	2,182	2,073	1,985	1,902	1,825
5급	11,529	11,139	10,715	10,248	9,978
6급	47,501	48,179	48,700	48,642	48,990
7급	50,371	49,854	49,174	48,433	47,899
총 인원	120,975	120,363	119,371	117,561	116,635

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을 포함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836	shjang@assembly.go.kr